

보상계획의 열람 등 공고

사업시행자인 아산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이를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16-362호(2016.10.31.)】 한 후, 위 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이를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0-247호(2020.6.16.)】 하여,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 제64조,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영업손실보상대상자, 관계인은 열람기간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

아산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강백선



1. 보상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아산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아산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산7-1번지 일원
- 면적 : 593,637㎡
-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까지.
- 시행방법 : 환지방식

나. 보상대상 물건의 내역

- 지장물, 영업권 손실보상 등,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이장 등
- 물건조서의 상세 내역은 지장물소유자 및 영업권자, 관계인, 주거세입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다. 열람장소 및 기간 등

- 열람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23-12, 2층(조합사무실) 및 아산시청 개발정책과
(조합사무실 전화 041-574-1861~2)
- 열람기간 : 2022.2.21.(월) ~ 2022.3.8.(화)(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이의신청기간 : 2022.2.21.(월) ~ 2022.3.8.(화)(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이의신청 : 공고 또는 통지된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장물소유자 및 영업권자, 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아산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시기 : 추후 개별 통지함.

3. 보상액 산정 및 보상절차

-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
- 보상절차 : 위와 같이 보상액을 산정한 후, 지장물소유자, 영업권자, 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여 협의기간에 협의하되, 그 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4. 기타사항

- 보상협의요청서는 추후에 지장물 등 소유자, 영업권자,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 지장물소유자 등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